

청주동남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 완화·선계약 후검증·계약금 5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07.30.(목)]

금회 입주자 추가모집은 기 모집공고(2020.05.15.)의 미신청 물량등을 대상으로 추가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입주자격 요건 완화 및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하여 향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 안내합니다.

'19.9.27.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계약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 - 완화대상자는 완화기준 임대조건 적용

① (소득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완화

공급계층	정상	√완화
일반*	100%	130%이하
청년(본인)	80%	10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140%이하

* 대학생, 청년(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② (기간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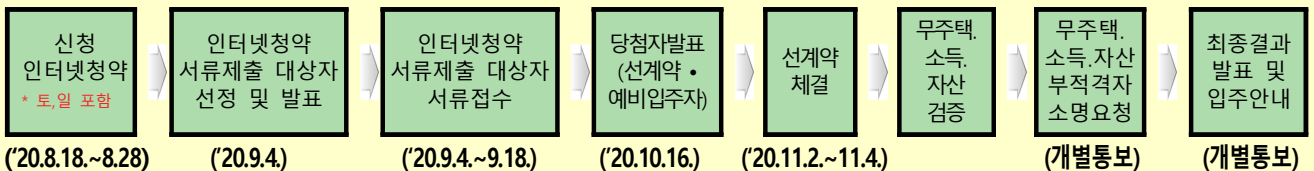
공급계층	입주자격	정상	√완화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	총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나이	만 6세 이하	만 9세 이하

③ (자산요건 완화)

(기본) 총자산 100%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완화) 총자산 130% 이하, 자동차 가액 2,764만원 이하

■ 입주자 선정 절차



■ 일정 및 장소

1,2,3순위 신청접수 (비대면접수 원칙)	인터넷청약자		당첨자발표 (선계약대상자·예비입주자)	선계약체결	최종결과 발표 및 입주안내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0.08.18.(화) 10:00 ~ '20.08.28.(금) 16:00 • 토,일요일 포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접수 청약신청 -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 고령자만 현장접수 가능 '20.08.27.(목)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09.04.(금) 16: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0.09.04.(금) ~ '20.09.18.(금) 등기 접수만 가능 - 20.09.18. 우편소인분 까지 유효함 (현장접수 불가)	'20.10.16.(금)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분양·임대정보·공지사항) 별도 게시	- 현장 계약 '20.11.02.(월) ~ '20.11.04.(수)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LH충북지역본부	'20.12.15.(화) 16:00 이후 (예정) 별도안내

■ 필수 유의사항(필독)

아래는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반드시 본 공고문 전체를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0.07.3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과정에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동호당첨자는 선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검증하여 계약유지 및 입주기간을 안내(부적격자는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됨)해 드리며, 그 외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선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금(50만원)을 납부하고 선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상 입주자격자와 완화된 입주자격자와의 임대조건은 달리 적용합니다.(단,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은 동일)
- 입주자격 완화 중 무주택기간·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된 입주자격자**의 경우, 기존(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자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나, 입주자격 검증결과 완화된 입주자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완화된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점부터**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정상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자산, 자동차가액, 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택, 소득 및 자산 소명요청 서류 미수령(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연락두절로 인한 부적격자 확정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7.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오시면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에서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 LH 충북지역본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936번지)
 LH충북지역본부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운로 146(용암동)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내 A5블록 998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공가* 호수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16형 (빌트인)	A1	16.64	11.0803	1.1352	7.1633	36.0188	대학생 계층	376	352		
							청년 계층				
	A2	16.64	11.4003	1.1352	7.1633	36.3388	고령자 계층 (주거약자용 외)	10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26형 (빌트인)	B1	26.51	16.7728	1.8086	11.4122	56.5036	청년 계층	10	5		
							소득 有				
26형	A1	26.51	16.7728	1.8086	11.4122	56.5036	청년 계층	46	104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204월
							소득 無				
A2	26.62	17.2105	1.8160	11.4595	57.1060	고령자 계층 (주거약자용 외)	30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70			
26형 (주거약자)	S	26.49	16.7223	1.8071	11.4036	56.4230	고령자 계층 (주거약자용)		52	48	
36형	A1	36.53	22.6439	2.4922	15.7257	77.3918	청년 계층	44	188		
							소득 有				
	A2	36.53	23.1239	2.4922	15.7257	77.8718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320			
							소득 無				
							고령자 계층 (주거약자용 외)	10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10			

* 상기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기준이며, 기 모집공고(2020.05.15.)의 미신청 물량들을 대상으로 추가입주자 및 예비자를 모집하며, 기 모집공고(2020.05.15.)의 계약현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 임대조건(정상) [계약금 : 선계약자(50만원), 예비입주자(임대보증금의 20%)]

주택형	공급 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16형 (빌트인)	대학생	11,764	500	11,264	70,480	(+) 2,000 (-) 9,000	13,764 2,764	60,480 92,980	
	청년	12,456	500	11,956	74,630	(+) 2,000 (-) 9,000	14,456 3,456	64,630 99,630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13,148	500	12,648	78,770	(+) 3,000 (-) 10,000	16,148 3,148	63,770 103,770	
	주거급여수급자	10,380	500	9,880	62,190	(+) - (-) 8,000	10,380 2,380	62,190 82,190	
26형 (빌트인)	청년	소득 有	20,016	500	19,516	119,920	(+) 11,000 (-) 16,000	31,016 4,016	64,920 159,920
		소득 無	18,904	500	18,404	113,260	(+) 10,000 (-) 15,000	28,904 3,904	63,260 150,760
26형	청년	소득 有	19,656	500	19,156	117,770	(+) 11,000 (-) 15,000	30,656 4,656	62,770 155,270
		소득 無	18,564	500	18,064	111,220	(+) 10,000 (-) 14,000	28,564 4,564	61,220 146,220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20,748	500	20,248	124,310	(+) 12,000 (-) 16,000	32,748 4,748	64,310 164,310	
	주거급여수급자	16,380	500	15,880	98,140	(+) 7,000 (-) 13,000	23,380 3,380	63,140 130,640	
26형 (주거약자)	고령자 (주거약자용)	20,748	500	20,248	124,310	(+) 12,000 (-) 16,000	32,748 4,748	64,310 164,310	
36형	청년	소득 有	26,532	500	26,032	158,970	(+) 18,000 (-) 21,000	44,532 5,532	68,970 211,470
		소득 無	25,058	500	24,558	150,130	(+) 17,000 (-) 20,000	42,058 5,058	65,130 200,130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29,480	500	28,980	176,630	(+) 21,000 (-) 23,000	50,480 6,480	71,630 234,130	
	고령자 (주거약자용 외)	28,006	500	27,506	167,800	(+) 19,000 (-) 22,000	47,006 6,006	72,800 222,800	
	주거급여수급자	22,110	500	21,610	132,470	(+) 14,000 (-) 17,000	36,110 5,110	62,470 174,970	

■ 임대조건(완화) [계약금 : 선계약자(50만원), 예비입주자(임대보증금의 20%)]

주택형	공급 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16형 (빌트인)	대학생	13,840	500	13,340	82,920	(+) 4,000	17,840	62,920	
	청년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 11,000	2,840	110,420	
	주거급여수급자								
26형 (빌트인)	청년	소득 有	21,840	500	21,340	130,850	(+) 14,000	35,840	60,850
		소득 無					(-) 17,000	4,840	173,350
26형	청년	소득 有	21,840	500	21,340	130,850	(+) 14,000	35,840	60,850
		소득 無					(+) 14,000	35,840	60,850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 17,000							
26형 (주거약자)	고령자(주거약자용)	21,840	500	21,340	130,850	(+) 14,000	35,840	60,850	
						(-) 17,000	4,840	173,350	
36형	청년	소득 有	29,480	500	28,980	176,630	(+) 21,000	50,480	71,630
		소득 無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21,000					50,480	71,630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 23,000
주거급여수급자									

- **정상 입주자격자와 완화된 입주자격자와의 임대조건은 달리 적용합니다.**(단,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은 동일)
- 위 임대조건은 선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예비입주자의 경우 총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임대료 및 전환보증금은 동일함)
-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계약자와 예비자로 나누어 선정되고,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계약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
- **16형(빌트인), 26형(빌트인)의 주택에는 2구형 가스쿡탑, 소형냉장고(냉장고장), 책상 및 선반이 설치됩니다.**
- 16형(빌트인)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청년계층"과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형의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외)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주택형 "대학생(청년 소득無)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에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내 36형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26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은 2020.04.30.~2020.05.29.이며, **금회 신청자의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①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②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3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852,44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
| | 정상(100%) | 완화(130%) |
| 1인 | 2,645,147원 이하 | 3,438,691원 이하 |
| 2인 | 4,379,809원 이하 | 5,693,752원 이하 |
| 3인 | 5,626,897원 이하 | 7,314,966원 이하 |
| 4인 | 6,226,342원 이하 | 8,094,245원 이하 |
| 5인 | 6,938,354원 이하 | 9,019,860원 이하 |
| 6인 | 7,594,083원 이하 | 9,872,308원 이하 |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완화 10,14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청주시 또는 진천, 보은, 증평, 괴산, 대전, 세종, 천안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충청북도(단, 1순위 지역 제외)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3-2.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㉔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㉔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㉔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0.07.31.~2001.07.30.)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총 7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3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완화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정상		완화	
		해당세대(100%)	본인(80%)	해당세대(130%)	본인(100%)
세대원 있는 세대주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5,693,752원 이하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7,314,966원 이하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8,094,245원 이하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9,019,860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9,872,308원 이하	7,594,083원 이하
그 외	-	-	2,116,118원 이하	-	2,645,147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852,447원), 본인은 524,583원 (완화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완화 30,810만원)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완화 2,764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 주택형 대학생(청년 소득無)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㉔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㉔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 3)의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인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청주시 또는 진천, 보은, 증평, 괴산, 대전, 세종, 천안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충청북도(단, 1순위 지역 제외)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⑦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①-⑦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④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완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 10년 이내)일 것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완화 13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완화 140%)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맞벌이부부 월평균소득기준	
	정상(100%)	완화(130%)	정상(120%)	완화(140%)
2인	4,379,809원 이하	5,693,752원 이하	5,255,771원 이하	6,131,733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7,314,966원 이하	6,752,276원 이하	7,877,65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8,094,245원 이하	7,471,610원 이하	8,716,879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9,019,860원 이하	8,326,025원 이하	9,713,696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872,308원 이하	9,112,900원 이하	10,631,716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맞벌이 부부는 786,875원) [완화 852,448원 (맞벌이 부부는 918,020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완화 37,44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완화 2,764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청주시 또는 진천, 보은, 증평, 괴산, 대천, 세종, 천안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충청북도(단, 1순위 지역 제외)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3-4. 고려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5.07.30. 이전 출생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정상(100%)	완화(130%)
1인	2,645,147원 이하	3,438,691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693,752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7,314,96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8,094,245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9,019,860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872,30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852,4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완화 37,44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완화 2,764만원) 이하 일 것

- ※ '고려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천

- ※ 고려자의 주거약자용과 주거약자용 외의 주택을 구분하여 추천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1,2,3순위 신청접수 (비대면접수 원칙)	인터넷청약자		당첨자발표 (선계약대상자·예비입주자)	선계약체결	최종결과발표 및 입주안내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0.08.18.(화) 10:00 ~'20.08.28.(금) 16:00 • 토,일요일 포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접수 청약신청 -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 고령자만 현장접수 가능 '20.08.27.(목)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09.04.(금)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0.09.04.(금) ~'20.09.18.(금) 등기 접수만 가능 - 20.09.18. 우편소인분 까지 유효함 (현장접수 불가)	'20.10.16.(금) 16:00 이후 *LH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분양·입대정보·공지사항) 별도 게시	- 현장 계약 '20.11.02.(월) ~'20.11.04.(수)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LH충북지역본부	'20.12.15.(화) 16:00 이후 (예정) 별도안내

■ 현장접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936번지)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는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 고령자만 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등기우편 접수처 :

우)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남행복" 앞

※ 등기우편은 2020.09.18.(금)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일반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확인은 우편물이 많은 관제로 신속한 유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체국홈페이지-국내우편 (등기)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청약센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합니다.

* 현장접수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 안내 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불가하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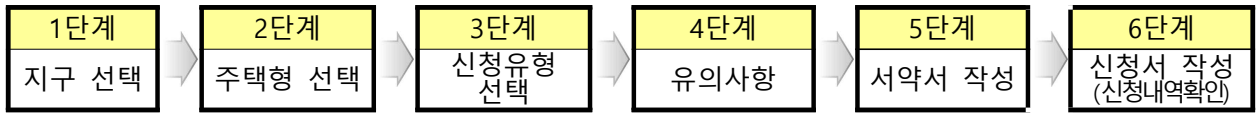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 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2020.08.17.10:00]부터 접수마감일[2020.08.28.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07.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계약취소 및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우)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남행복" 앞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_붙임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_붙임2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_붙임3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서약서(필수) 및 장애인 세대 확인서(해당세대만)	• 공사 양식(붙임4,5)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1통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_붙임6)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 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7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_붙임7)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_붙임7)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서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6. 계약 안내

■ 계약대상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계약안내

- 현장 계약 [기간 : 2020.11.02.(월) 10:00 ~ 2020.11.04.(수) 16:00 중식시간 12~13시 제외]
- 계약금 입금 후 선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금 납부방법 및 상세 절차는 추후에 선계약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되며 계약금 환불 요청 시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p>「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479 1469 636">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형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완화된 입주자격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점부터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정상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자산, 자동차가액, 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284 651 1453 846">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 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당첨자 등으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남측 직선 약 300m거리 지구 외에 소수의 분묘가 있으며, 인근 목련로에 송전철탑(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목련로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왕복 2차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추후 확장예정(왕복6차선)이며,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동남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단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는 대체시설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설치예정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휀룸(전체 동),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하주차장 램프나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바닥결로로 인해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공용세탁실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등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4~23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273대, 지하 427대를 포함하여 총 700대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은 시스템욕실로 시공되며, 26S(주거약자용)세대는 일반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발코니는 소형세탁기(9kg)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16타입은 소형세탁기(9kg)가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타입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세대 내부 에어컨은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공간만 제공하고, 매립형 냉매배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설치 시 입주자 부담)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은 교육청 일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A5블록 인근에 학교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라 개교시기가 미확정으로, 동남지구 개발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택건설 준공 1년 전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만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내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제품을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세대 현관에 1개소 설치 (다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를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5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서한 (주)한국종합건설 삼화건설(주)	공사이행보증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p>임대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주거복지사업1부 043-901-4541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p>당첨자 ARS</p>	<p>1661-7700</p>
<p>인터넷 청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p>현장 접수처 약도</p>	 <p>※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936번지)</p>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로 인한 피해 또는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7.30.

